

○出席議員 (30人)

金 元 泰	黃 泰 植	曹 熙 太
宋 潤 錫	金 星 煥	朴 烊 緒
李 天 揆	李 鐘 萬	李 奉 衡
具 又 石	韓 賢 德	金 鍾 烈
沈 載 祥	孫 龍 浩	洪 性 煥
俞 南 烈	金 汶 泰	李 宗 一
鄭 然 宇	金 相 烈	李 康 泌
金 東 輝	蔡 雲 錫	尹 東 錜
洪 吉 枝	田 炳 萬	尹 正 鑄
金 裕 顯	尹 明 奎	權 五 範

○出席公務員

財 務 課 長	李 泳 默
家庭福社課長	金 照 子

(参考)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1992. 2.15. 大統領令 第13,586號로 改正公布 된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의 規定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改正하고자 함.

○ 주요골자

-所管常任委員會別로 監查를 행 한다.(第2條)

-調査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상임위원회에서 調査를 시행한다.(第3條)

○ 근거법령

地方自治法 施行令 第17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條第1項중 “議會는” 다음에 “每年 定期會議 會期中 3일 이내에”를 삽입하고, “本會議의 議決”을 “所管常任委員會別로 監查를 행 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하고, “監查를 행한다”를 “監查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

第2條第2項중 “令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을 “令第17條의2 規定에 의한 監查計劃書는 常任委員會 또는 監查委員會가 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작성하며,”로 한다.

第3條第2項중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委員會등”으로 한다.

第3條第3項중 “調查特別委員會(이하 “調查委員會”로 한다)를 구성한다.”를 “調查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이하 “調查委員會”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附 則

i]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